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산후조리원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규정 준수 조항 신설〉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302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3
1. 산후조리원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규정 준수 조항 신설	3

I. 개요

1.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30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소병훈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8. 28.
- (3) 회 부 일 : 2024. 8. 2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후조리원에서 부주의로 인한 신생아 낙상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신생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을 현행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나 화재·누전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신생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산후조리원과 관련하여 법적 용어를 ‘영유아’로 표기하고 있는 바,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산후조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산후조리원에서의 신생아 사

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제3호 신설 등).

II. 검토 의견

1. 산후조리원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규정 준수

-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에서 낙상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산후조리업자가 준수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제3호의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산후조리업자는 임신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설></u>	3. <u>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할 것</u>
3. (생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u>제3호에 따라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임신부 또는 보호자로부터 그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통보받아 확인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 및 격리 등 필</u>	5. <u>제4호에</u> ----- ----- ----- ----- -----

요한 조치를 할 것 5. 제3호에 따라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 및 제4호에 따른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 제15조의8(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2. (생략) 3. 제15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 7. (생략) 제15조의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2. (생략)	----- 6. 제4호에----- -----제5호에----- ----- ----- 제15조의8(시정명령)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4호까지의----- ----- 4. ~ 7. (현행과 같음) 제15조의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① ----- ----- ----- ----- ----- ----- -----. 1. 2. (현행과 같음)
--	--

3. <u>제15조의4제4호에</u> 따른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 ⑤ (생 략) 제26조(벌칙) ① (생 략) ② <u>제15조의4제3호를</u>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2. <u>제15조의4제4호를</u>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u>제15조의4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u> <신 설> <신 설>	3. <u>제15조의4제5호에</u>-----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5조의4제4호를</u>----- ----- -----. ③ ----- ----- -----. 1. (현행과 같음) 2. <u>제15조의4제5호를</u>----- ----- 제27조(과태료) ① ----- ----- ----- -. 1. <u>제15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하지 아니한---</u> 1의2. <u>제15조의4제2호를 위반하여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u> 1의3. <u>제15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u>
---	---

1의2. 제15조의4제5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 및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 5. (생 략) ② · ③ (생 략)	1의4. 제15조의4제6호를----- ----- ----- -----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

□ 현행법 제15조의4¹⁾에서는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보건복지부령의 별표²⁾로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산후조리업자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각목에서 열거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현행의 체계 안에서는 낙상사고와 같은 안전사고예방조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개정안은 이를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포함시켜서 영유아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1) 「모자보건법」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할 것
2.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
가. 소독 등의 환경관리
나.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다.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3.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제3호에 따라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임산부 또는 보호자로부터 그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통보받아 확인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제3호에 따라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 및 제4호에 따른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6조(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② 법 제15조의4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별표 4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2) p. 10. 참고자료: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감염·질병 예방 조치 참조

< 산후조리원에서 최근 일어난 영유아 안전사고 등 현황 >

	낙상	화재	기타	합계
2021년	5	1	-	6
2022년	2	3	1(누수)	6
2023년	5	1	1(머리 부딪힘)	7

* 자료: 보건복지부

□ 다만,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 취지를 제15조의4제3호의 신설로서 구현하려는데, 이 방법에 따르면 개정안의 취지와 무관하게 연쇄적으로 시정명령·산후조리원의 폐쇄 등·벌칙·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후속 조문들을 다수 개정해야 하는 체계상의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이미 현행법 체계에서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는 제15조의4제2호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개정하는 방안을 수정안으로서 고안해 볼 수 있을 것임.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 ----- ----- ----- ----- -----.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 ----- ----- ----- ----- -----.

1. (생 략) 2. <u>감염이나 질병을 예</u> <u>방하기 위하여 다음</u> <u>각 목의 사항에 관</u> <u>하여 보건복지부령</u> <u>으로 정하는 조치를</u> <u>할 것</u> 가. 소독 등의 환경관리 나. 임신부·영유아의 <u>건강관리</u> 다.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u><신 설></u>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u>영유아 안전사고 예</u> <u>방을 위하여 보건복</u> <u>지부령으로 정하는</u> <u>안전관리규정을 준수</u> <u>할 것</u>	1. (개정안과 같음) 2. <u>감염이나 질병·안전</u> <u>사고를</u> ----- ----- ----- ----- ----- 가. (현행과 같음) 나. ----- <u>건강·안전</u> ---3) 다.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	--	---

□ 수정안은 제15조의4제2호만의 개정을 통하여 개정안의 취지를 모두 반영하고 있음. 즉, 제15조의4제2호를 위반할 경우 이미 현행법 제15조의84)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고, 제27조제1항제1호5)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으므로 다른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임.

3) 개정안은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제15조의4는 임신부 또한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모자보건법」

제15조의8(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제15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모자보건법」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의4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관련 기관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안전사고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개정작업의 간결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현행법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국산후조리원협회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반드시 규제라는 수단을 통한 필요는 없음. 현재 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규제를 받고 있으며, 그 외에도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산후조리원 지도점검 시 안전관리 점검을 받고 있음. 향후 도입될 산후조리원 평가의 한 항목에서도 안전관리 세부항목이 포함되어 있음. ○지속적인 규제 도입에 따른 관리 비용 증가로 산후조리원 이용료 상승 및 산후조리원 폐업 가능성의 상승도 고려해야 함.
대한의사협회	○신생아 낙상사고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관리의무와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조치로 인하여 출산율 감소와 이로 인한 제반 산업 위축의 우려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8

【참고자료】**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감염·질병 예방 조치**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설 2020. 1. 16.>

감염·질병 예방 조치(제16조제2항 관련)

1. 소독 등의 환경관리

- 1) 영유아실의 벽면 및 바닥 등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 2) 사용 중인 영유아 요람은 매일 깨끗한 물걸레로 닦고, 퇴원한 영유아 또는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영유아의 요람은 국내외에서 그 효과성을 인증 받은 소독제로 소독한다.
- 3) 기저귀, 물티슈, 비누 및 보습제 등 영유아 용품은 영유아별로 보관·사용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욕용 대야는 사용 후 소독하여 보관한다.
- 4) 세탁·소독된 영유아 의류와 침구류는 청결한 곳에 보관·관리하고, 필요할 때 즉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갖추어 두어야 한다.
- 5) 젓병, 젓꼭지, 유축기, 수유쿠션 및 수유쿠션 덮개 등 수유물품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끓는 물이나 소독제로 소독한 후 건조하여 전용함에 보관한다.
- 6) 공동으로 사용하는 임산부 좌욕기의 본체는 100 ~ 500배로 희석한 염소계 소독제 또는 4급 암모늄 소독제에 3분간 담그는 방법 등으로 매일 1회 이상 소독한다.
- 7) 세탁물 수집 장소 및 용기는 매주 1회 이상 소독하고, 세탁물 수집 장소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 8) 조리장의 식기 및 조리기구 등 주방용품은 소독한 후 건조하여 전용함에 보관한다.
- 9) 에어컨, 히터 및 공기 청정기의 여과지는 제조사의 권고에 따라 교환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 10) 1)부터 9)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 결과를 매일 아래 표에 기록한다.

소독 등의 환경관리 결과

연번	점검사항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담당자								
	확인자								
1	영유아실 관리								
2	영유아 요람 관리								

3	영유아 용품 관리								
4	영유아 의류 및 침구류 관리								
5	수유물품 관리								
6	공용 좌욕기 본체 관리								
7	세탁물 수집 장소 및 용기 관리								
8	주방용품 관리								
9	냉난방 및 환기 시설 관리								
작성방법									
[담당자] 매일 근무순서를 정하여 점검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한 후 '○', '×' 또는 '측정 수치'로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확인자]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가 기록합니다.									

2. 임신부·영유아의 건강관리

- 1) 임신부와 보호자가 새로 입원한 경우 임신부와 보호자가 지켜야 할 위생수칙, 소방안전·대피계획, 방문객 관리, 감염 예방,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에 관한 계획(이송여부 결정기준, 이송절차 등)을 교육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 후 이에 대한 확인을 받는다.
- 2) 영유아가 새로 입원한 경우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는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다목3)에 따른 사전관찰실에서 관찰하고, 새로 입원한 날에는 모자동실할 것을 권장한다.
- 3) 유축한 모유는 냉장 보관하고, 유축 후 72시간 이내에 수유하며, 분유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수유 중 영유아 혼자 젖병을 문 채로 있게 해서는 안 된다.
- 4) 산후조리원 종사자에게 근무 시작 전 손 위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 5) 입원 중인 임신부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전까지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 격리한다.
- 6) 입원 중인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전까지 임신부실에서 모자동실하거나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 격리한다.
-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 결과를 매일 아래 표에 기록한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결과

연번	점검사항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담당자								
	확인자								
1	입원 관리								
2	영유아 관리								
3	영유아 수유관리	냉장 보관 모유							
		분유 유통기한							
		수유 방법							
4	손 위생 관리								
5	감염·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한 사람에 대한 격리								
작성 방법									
[담당자] 매일 근무순서를 정하여 점검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한 후 '○', '×' 또는 '측정 수치'로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확인자]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가 기록합니다.									

3. 종사자 위생관리

- 1) 일상적인 활동, 임산부·영유아의 간호·돌봄 전후 손을 깨끗이 하고, 영유아를 돌보는 중에는 손톱을 짧게 유지하며 인조손톱 등을 부착하지 않는다.
- 2) 영유아실 근무 중에는 전용 근무복을 착용하고, 반지, 팔찌 및 시계 등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는다.
- 3) 취사 중에는 위생복, 위생모 및 위생화를 착용하고, 급식 준비 및 급식 중에는 반지, 팔찌 및 시계 등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는다.
- 4) 근무 전 설사, 고열, 호흡기 질환 및 피부 질환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 결과를 매일 아래 표에 기록한다.

종사자 위생관리 결과

연번	점검사항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담당자								
	확인자								
1	손 위생 관리								
2	영유아실 전용 근무복 착용								
3	취사자 위생 관리								

4	질병 확인								
작성 방법									
【담당자】 매일 근무순서를 정하여 점검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한 후 '○', '×' 또는 '측정 수치'로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확인자】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가 기록합니다.									

4. 방문객 위생관리

- 1)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문객이 취해야 할 조치를 방문객에게 안내한다.
- 2) 영유아를 만지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손을 씻은 후에는 물건이나 기구를 만지지 않도록 방문객에게 안내한다.
- 3) 산후조리원 내에 감염병이 유행 중이거나 방문객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방문을 제한한다.
 - 가) 감기 등 호흡기 질환, 상기도(上氣道) 감염을 포함한 급성 열성 질환, 활동성 결핵 및 B형 간염, 설사 등의 증세를 동반한 위장 관계 질환, 개방성 상처, 전파될 우려가 있는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
 -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
 - 다)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등 감염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라) 최근 1개월 이내 홍역(紅疫)·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풍진(風疹) 예방접종, 수두(水痘) 예방접종 및 폴리오 예방접종 등을 받은 아동을 동반하는 경우
- 4) 방문객이 만 6세 이하인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방문을 제한할 수 있다.
- 5) 1)부터 4)까지의 사항을 방문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게시한다.
-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 결과를 매일 아래 표에 기록한다.

방문객 위생관리 결과

날짜	시간	방문객 이름	임산부 이름	관계	방문객 연락처	안내 사항		방문객 서명	확인자
						질 환 유무	인 지 여부		
월/일									
월/일									
작성 시 참고사항									
[작성인] 임산부 또는 영유아와 접촉할 사람이 작성합니다. [날짜, 시간, 방문객 이름, 임산부 이름, 관계, 방문객 연락처]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 등을 위해 작성합니다. [안내사항 및 방문객 서명] 호흡기 질환 등의 유무와 방문객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 또는 '×'로 표시하고, 방문객이 안내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인지 여부를 작성하여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을 발생하게 했을 경우 민사상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서명합니다. [확인자]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가 기록합니다.									